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강원대학교병원” 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에 관한 것으로 “강원대학교병원” 과 (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의 적정한 납품 단가계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제품규격)

구분	재질	규격(cm)	단위	도형색	비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플판지류	63 L (41.5*41.5*37)	EA	황색	
		12 L (25*24.5*20)	EA	황색	
		4 L (17.6*16.9*13.9)	EA	황색	
	봉투형 용기	63 L (95*95)	EA		
		12 L (50*68)	EA		
		5 L (38*46)	EA		

- 가.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을 포함한다.(단, 봉투형 용기는 제외한다.)
- 나.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다.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4조 (납품기한)

가.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가 납품한다.

#### 제5조 (납품 예상물량)

가. 납품 예상물량은 별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서]를 참조한다.

나.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코로나19 관련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납품 예상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6조 (납품과업)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 납품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각 규격의 의료폐기물 내부비닐을 추가로 요청 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반품)시 소요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별도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용량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마. 골판지류 전용용기(63, 12, 4L)에는 사용개시년월일 배출자란에 강원대학교병원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

사. 부적합한 용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 납품

현황표, 성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자. 본 계약 체결 후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은 낙찰율을 적용한다.

#### 제7조 (반품)

가. 제품이 불량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환불 또는 제품교환은 다음 납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잘못 요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 제8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 강원대학교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계약 불이행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공급지연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4) 강원대학교병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5) 강원대학교병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강원대학교병원의 고객 등 제 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계약상대자가 제 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 등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회사정리, 파산, 청산 절차의 신청을 하는 경우
- 7) 계약상대자가 병합에 의한 해산 또는 그 영업의 전부,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8) 계약상대자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해 민사, 형사 및 행정상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진다.

#### 제9조 (기밀보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기타 강원대학교병원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

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기타사항)

- 가.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